

국회의원(김민전) 징계안

의안 번호	7477
----------	------

요구연월일 : 2025. 1. 13.

요 구 자 : 정춘생 · 김재원 · 이해민
백선희 · 차규근 · 김준형
서왕진 · 황운하 · 강경숙
오세희 · 김선민 · 박은정
신장식 · 김용민 · 윤종균
정을호 · 박성준 · 정준호
서미화 · 한창민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 김민전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과거 테러 조직이었던 명칭을 사용하는 ‘반공청년단’을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김민전에 대한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 필요한 사실관계와 근거는 아래에 서술한다.

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은 반공청년단을 기자회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며 ‘반공청년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였고, 국회의원 김민전의 뒤에는 과거 ‘백골단’의 상징인 하얀색 방탄모를 쓴 ‘반공청년단’ 인원들이 서 있었다. ‘반공청년단’은 과거 독재정권 및 군부정권의 연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막아선 테러조직이자 깡패집단이었다.

다. 국회의원 김민전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것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한 역사를 가진 ‘반공청년단’을 소개하고 동원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며,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라. ‘반공청년단’의 대표인 김정현은 이 자리에서 ‘백골단’을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으로 소개하였으며 “반공청년단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적법한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였다.

마. 또한, ‘반공청년단’ 대표인 김정현은 “저희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위법적인 태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깡패 동원 및 무장시켜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한 발언으로서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고 유혈사태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김민전이 이들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개한 것은 제2의 내란이다.

바. 한편, 국회의원 김민전은 2025년 1월 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출처가 불분명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공유하였다. 국회의원 김민전은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셨습니다. 뉴스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고 쓰여 있었으며, 중국어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함께 있는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다. 국회의원 김민전은 사진이 찍힌 시점과 장소, 인물 및 국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글을 공유하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변명하며 중국을 언급하여 중국과 외교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수습 및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과 언론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조장하여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아. ‘반공청년단’은 불법·폭력 단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 행위이고,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력단체의 구성 및 가입·활동을 유도한 국회의원 김민전은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범죄행위로 유인한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제123조(직권남용)을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가장 중한 제명으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법령]

헌법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

-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